

스승의 날 ^{알아야 할} 청탁금지법



Q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개인이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?

A 아니요, 안됩니다.

다만,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수님들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의 경우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

Q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수님께 감사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?

A 아니요, 안됩니다.

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. 학생들이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하더라도 현재 수업을 듣거나 지도받는 학생이라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저촉됩니다.



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교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?

A 예, 있습니다.

특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.



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?

A 예, 가능합니다.

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교수와 학생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, 1회 100만원(매 회계연도 300만원)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